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가’를 추가〉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82)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20.
3. 회부연월일 : 2026.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승진이나 임용 과정에서 인성과 윤리성을 포함하는 자질평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질평정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정치적 중립 의지 등 기본적인 직무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과와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과와 자질을 함께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사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u>경력평정</u> ,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승진) ① ----- ----- ----- <u>자질평정, 경력평정</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20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과와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및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이 포</u>

현행	개정안
	<u>합되어야 한다.</u> ③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u> ④ <u>그 밖에 근무성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실적 중심 평정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성·준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와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도입하려는 등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성실성·준법성 등 자질 관련 요소를 근무성적평정의 세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총경) 및 별지 제2호서식(경정 이하)에서도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평정요소로 규정하면서 직무수행태도 항목에 ‘성실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¹⁾. 이처럼 현행 체계에서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일정 부분 평가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근무성적평정의 하위 요소에 두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상 독립된 평정 요소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인사임용의 핵심 기준으로 보다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판사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서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자질평정 기준에 성실성·청렴성·친절성 등을 포함²⁾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경우에도 「검찰청법」 제35조의2에서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을 규정하면서 자질평정 기준에 성실성·청렴성·친절성 등을 명시³⁾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른 사법 영역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 기준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공무원의 인사 기준 중 핵심 요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제도적 균형의

-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행안부령) 별지 제1호서식(총경) 및 별지 제2호서식(경정 이하)에서 평정요소로 ‘성실성’, ‘준법성’ 등 포함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행안부령)

○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총경)에 따른 평가요소

- (근무실적) △ 직무의 양 △ 직무수행의 정확성 △ 직무수행의 신속성
- (직무수행능력) △ 지식 및 기술, △ 이해 및 판단력 △ 기획 및 창의력 △ 관리 및 지휘력
- (직무수행태도) △ 성실성 및 규율 준수 △ 친절 및 협조성 △ 적극성 및 책임성

○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에 따른 평가요소

- (제1평정요소) △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 포상 △ 교육훈련 △ 근무태도
- (제2평정요소) △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직무수행태도(성실성 및 준법성, 친절도 및 협조성, 적극성 및 책임감)

- 2)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검찰청법」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음.

특히 개정안이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과 관련하여, 헌법 제7조4)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5)에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일반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승진임용의 평정 요소로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무의 이행 수준을 인사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 실질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조항6)을 두고 있는바, 이를 다시 승진임용의 평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에 대한

4)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6)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7조(벌칙)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검토와 함께, 해당 의무의 이행 수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평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현행 제도에서도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성실성·준법성 등 기본적 자질을 이미 평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4